

곤충연구소 부분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10. 26. ~ 10. 28.(3일간)
-  감사범위 : 2014. 11. 11. ~ 2016. 10. 25.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2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각종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4, 주의 4, 현지시정 6)
 - 본 처분 8건(시정 4, 주의 4)
- 재정상 조치
 - 3건 534,381원
(세입 1건 119,381원, 추징 2건 415,000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명)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구분	금액(원)
계 (곤충연구소)		8건	주의 4 시정 4	계 3/ 세입 1/ 추징 2/	534,381 119,381 415,000
1	시설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세입 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미흡	주의		
2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	119,381
3		신용카드 보관 관리 소홀	시정		
4		선급금 지급 부적정	주의		
5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6		정부수입인지 및 예천군수입증지 미첨부	시정	추징	60,000
7		경상북도 지역재발채권 매입필증 미소화	시정	추징	355,000
8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 부적정	주의		

주요지적사항

일반행정 및 회계분야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재정시스템 이해 부족과 수납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대상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불일치
 -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제45호 2016.2.20)에 의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119,381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음
 - ▶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19,381원을 세입조치하고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제45호 2016.2.20)에 신용카드 보관·관리요령에 의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에도,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 신용카드 관리요령에 따른 각종 대장 작성·비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거하여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4. 8.20. ○○○○(주) ▲▲▲와 계약한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전기공사에 대하여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선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범위를 초과한 70.576%의 선급금을 지급

-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에 집행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행사운영비를 인부사역으로 지출

-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에 관한 계약 등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에 해당 하는 정부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예천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에 1만원의 예천군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곤충생태원 편의 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시행” 등 총 4건 사업을 계약 후 지출함에 있어 정부수입인지 및 예천군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않았음
 - ▶ 미첨부한 정부수입인지 및 예천군수입증지 60,000원을 첨부 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1항 3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 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의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5년도 ◆◆◆◆(주)와 계약한 곤충연구소 3D 입체 영상물 임차 대금 지출시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소화
 - ▶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6.09.26. □□면 ○○리 58-1 ◆◆◆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2016년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2015년도에 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